
한국금융연수원 종합감사 결과

2021. 2.

금 융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정기(3~4년 주기) **종합감사 시기 도래**(직전 감사 2017.2월 실시)
- 한국금융연수원의 고유사업, 예산집행·회계처리, 인력·조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금융권 임직원 연수, 자격검정 운영 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를 도모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감사기간: 2020.12.14.(월) ~ 12.22.(화), 7일

□ 감사대상: 2017.2월~2020.12월 한국금융연수원 업무 전반

□ 감사요원: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외 6명

-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6명, 한국회계기준원 1명

□ 감사중점

- 수행사업(연수·자격검정·도서발간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예산편성·집행, 계약사무의 처리 및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의 적정성
-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 정관 등 제 규정 준수여부
- 종전 금융위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2. 감사결과 지적사항

① 고유사업 분야

□ KBI 금융DT 테스트 미등록 및 변별도 조절 미흡

- 금융연수원은 디지털금융 전문 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금융인 및 예비 금융인들에게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마인드를 확산하고 디지털금융 전반에 대한 기본지식과 업무활용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KBI 금융DT 테스트를 신설('20년)

*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마케팅, 디지털금융 비즈니스 등 6개 분야

- 그간 총 2차례 실시하였고('20.7월, 11월), 총 4,371명이 응시하여 3,955명이 60점 이상 득점하여 합격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 금융연수원은 2020년 'KBI 금융DT 테스트' 를 신설하여 2회 시행하면서 동 테스트를 사전에 주무부처에 등록하지 않음

※ KBI 금융DT 테스트와 유사한 '매경테스트'(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한경테스트'(경제이해력인증시험)는 주무부처(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국가공인자격

- 한편,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시험인 현행 KBI 금융DT 테스트는 타 자격시험(7개 국가공인자격과 5개 자체자격 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높은 편으로

- 「KBI 금융DT 테스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정시험관리위원회는 인증시험의 공정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인증시험의 난이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심의하여야 했으나, 변별도 조절이 미흡했음

- 또한 KBI 금융DT 테스트는 응시자의 디지털금융 관련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합격 여부가 아닌 등급제(또는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 금융연수원은 KBI 금융DT 테스트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시정), KBI 금융DT 테스트를 등급제(또는 점수제)로 변경할 필요 (권고)

□ 원격연수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미흡

- 금융연수원은 집합연수 외에 원격연수로 통신연수와 사이버연수를 운영 중으로
 -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형 학습형태인 원격연수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원격연수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현재 연수생은 금융연수원 연수프로그램 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목적, 연수수준, 연수대상, 커리큘럼 등을 확인하여 연수과정을 선택하고 있으나
 - 연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책자 및 홈페이지 정보로는 연수의 상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 금융연수원은 연수생이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연수 과정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할 필요(현지조치)

② 인사관리 분야

□ 파견교수 책임강의시간 미달

- 금융연수원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 받아 파견교수로 운영하고 있고(「인사규정」 제21조)
 - 파견교수에 대해 연간 책임강의시간 156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교수실운영요강」 제10조 제1항), 연구수당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음(「보수규정」 제27조, 「자가운전제운영요강」 제5조)
- * 강의준비 기간 3개월은 책임강의시간에서 감면하여 1년 파견시 책임강의시간은 117시간(「교수실운영요강」 제10조 제2항)
- 2017년~2019년 중 파견교수 5명의 책임강의시간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책임강의시간 미달률이 65.8%에 달함
 - 책임강의시간에 미달할 경우 책임강의시간 미달비율만큼 연구수당을 환입하여야 하나, 특임업무(신규과정 개발 및 국제세미나 준비 등) 수행을 이유로 연구수당 환입을 면제하였음

※ 파견교수의 강의시간이 연간 책임강의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연간 책임 강의시간에 대한 미달 책임강의시간의 비율에 당해연도 연구수당을 곱한 금액을 환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환입을 면제할 수 있다(「교수실운영요강」 제15조 제2항).

- 환입 면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교과 내용 자문 및 교재 수정 검토, 신규과정 교과구성 자문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일부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임

⇒ 금융연수원은 파견교수가 책임강의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 배정 및 특임업무 부여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 (주의)

□ 인사위원회의 적정 권한 미준수

○ 금융연수원은 2019년에 경력직원 2명을 채용하기로 계획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였는데

-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력직원 면접자 중 2위를 기록한 지원자를 불합격 시키고 최고 득점자 1명만 합격후보자로 선정함

“경력직원 면접전형 참가자 전원의 역량보유 수준이 타 채용 시의 지원자 대비 다소 낮음을 고려하여 ‘면접전형 결과 최고 득점자 1명 외 지원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고 득점자인 1명만 합격후보자로 선정’ 할 것을 의결함”

○ 금융연수원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직원의 채용에 관한 원장 자문’ 으로 되어 있음에도

- 합격인원(1명)을 명시하여 후보자를 선정함으로써 인사위원회가 채용 자문의 권한을 넘어 운영됨

⇒ 금융연수원은 직원 채용시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적정 권한 이내로 운영될 필요 (주의)

□ 인사규정에 예비합격자 제도 마련 필요

- 금융연수원은 2019, 2020년 직원 채용시 지속적으로 예비합격자를 두고 있으나
 - 예비합격자 명단 작성 여부와 그 작성방법(채용예정인원 대비 비율 등)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않음
- ⇒ 금융연수원은 직원 채용 관련 예비합격자 제도를 「인사규정」에 반영할 필요 (현지조치)

③ 복리후생 분야

□ 일부 복지항목을 「복지규정」에 미반영

- 금융연수원은 별도의 내부결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임원에 대한 복지항목 (건강문화보조비, 자기개발 지원금 등)을 「복지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임원과 직원이 엄격히 구분됨에도 명시적 근거 없이 직원에 관한 복지규정(경조금, 의료비 등)을 임원에게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 금융연수원은 복지항목 관련 규정의 일관성·명확성·투명성을 고려하여, 「복지규정」에 미반영한 임원의 복지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 (제도개선)

④ 모범사례

□ 코로나19 자체 방역반 운영 등을 통한 방역 철저

- 금융연수원은 연수생 등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자체방역반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음
 - KBI 방역반을 구성하여(직원 4명 내외) 연수생 발열 체크 및 손소독, 연수원내 방역 물품 비치현황 점검을 실시
 - 또한 연수원 전체 특별소독 실시(매일), 공용부 1일 4회 이상 소독, 스마트 체온시스템 및 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 식당 및 휴게공간 아크릴판 설치, 강사·연수생·전직원 발열체크 실시(매일), 집합연수의 비대면강의방식 도입 등 체계적인 방역활동 실시

5] 적극행정 면책

□ 'KBI 금융DT 테스트' 미등록에 대한 기관주의 면책

- 금융연수원이 2020년 'KBI 금융DT 테스트' 를 신설하여 2회 시행하면서 주무부장관에게 미등록한 사항은 “기관주의” 에 해당하나,
- 금융회사(사원기관) 직원들에 대한 디지털금융 관련 교육 수요가 급증* 하는 상황에서 사원기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DT연수부 및 인증시험을 신설하였고

* 디지털금융분야 연수 수요: ('15) 403명 → ('16) 814명 → ('17) 4,353명
→ ('18) 4,814명 → ('19) 8,542명 → ('20) 20,551명

- 「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 사전 등록제’ 는 거짓·과장광고 및 역량 없는 민간자격관리자의 불법적 자격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 금융연수원은 7종의 국가공인 자격 및 11종의 등록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교육연수기관으로서 인증 테스트를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인 「자격관리 규정」 과 별도로 「KBI 금융DT 테스트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시행하였고('20.4.13.),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자격이 아닌 자체인증테스트임을 명기한 바
- 금융연수원이 「자격기본법」 상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적극행정 면책을 함